

■ 세제개편안, 서민지원 대책은

다자녀 추가공제 2배로 확대

일용직 원천징수세율 현행 8%서 6%로 인하

中企 기업 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정부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가 '서민과 중산층 지원'이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원을 확대하고 비과세·감면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지만 서민이나 중소기업 관련 비과세·감면 조치는 살려두거나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 일용직·농어민·장애인 지원 확대=우선 저소득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하기로 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 또는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노동자는 1년) 고용돼 있지 않은 근

로자를 뜻한다. 정부는 일용근로자 116만여명의 세부담이 25%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근로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이 과세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농어민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세금감면책이 시행된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격기준의 양도세 감면 일몰을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등 농민에 대한 양도세 경감책들이 담겼다.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는 현 행 37개에서 39개로 늘어나며, 부

총급여 (만원)	다자녀 추가 공제시 균소세 감소 효과		
	2자녀 	3자녀 	4자녀
3,000	전 291(천원) 후 270 -7.22%	200 159 -20.50	132 65 -50.76
4,000	1,140 1,065 -6.58	765 603 -21.18	498 322 -35.34
5,000	2,257 2,382 -3.05	2,082 1,857 -10.81	1,707 1,332 -21.97
6,000	3,832 3,757 -1.96	3,457 3,232 -6.51	3,082 2,707 -12.17
7,000	5,208 5,133 -1.44	4,833 4,608 -4.66	4,458 4,083 -8.41

자료/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양도세 중과 완화 결정 못해

변호사 등 세무검증 도입

수도권 면세 50%로 축소

■ 재정건전성 강화 역점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친서민 대책에 중점을 뒀으나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

우선 내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해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에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

대상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인 변호사, 회계사, 병의원, 수의사, 학원, 예식장 등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대신 세무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을 세액공제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무검증을 받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시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추후 세무조사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무사도 징계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각 사업장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판정된다.

비과세·감면제도는 19개가 폐지되는 등 대폭 축소됐다.

내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폐기하기로 했다. 쌍꺼풀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이 그 대상이다.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도 부가세를 내야한다.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도 부가세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추가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친서민 대책에 중점을 뒀으나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

우선 내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해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에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

대상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인 변호사, 회계사, 병의원, 수의사, 학원, 예식장 등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대신 세무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을 세액공제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무검증을 받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시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추후 세무조사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무사도 징계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각 사업장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판정된다.

비과세·감면제도는 19개가 폐지되는 등 대폭 축소됐다.

내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폐기하기로 했다. 쌍꺼풀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이 그 대상이다.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도 부가세를 내야한다.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도 부가세 대상에 포함됐다.

세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조기기에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를 추가했다.

◇ 대·중소기업 상생 및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최근 정부가 역점을 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세제지원책도 마련됐다.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부품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해 조성된 '상생보증펀드'와 관련, 이 펀드에 출연하는 기업에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해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또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기업승계 시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13년까지로 늘렸다.

광주시가 불법 유인불과의 전쟁에 이어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선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3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지난 주말과 휴일 불법현수막 4020여개를 정비했다는 관련 실과 보고를 받고 "불법 현수막은 사실 창피한 일로 여기자기에 신장개업, 아파트 분양 등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도시 전체가 난리다"고 운을 냈다. 강 시장은 "이를 간 정비해서 4000건 이상이라면 그만큼 심각한 것이고, 공직자들은 전화해서 철거하라고 한 뒤 과태료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주정자 단속과 관련해서도 "서구청이 단속예고를 휴대폰으로 해주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단속하는 것은 좋은 모범 사례"라며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를 참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처리방식도 문제로 제기됐다. 강 시장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 회신 봤는데 정말 실

망했으며 차라리 안 보내는 것이 나은 것"이라며 "실국에서 겸토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로 근본적으로 되는 방향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도심 곳곳에 꽂밭을 기구겠다는 농업기술센터의 보고에 강 시장은 "이는 도시환경을 훼손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어떤 꽂을 어떻게 심어 관리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차지구와 논의해 모두 10곳을 시범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광주디자인센터에 대해 비엔날레와의 연계, 광주발전연구원에는 단기 과제에 신속하고 실용적인 연구성과를 제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는 수지균형 노력 병행 등을 주문했다. 강 시장은 또 회의 말미에 "전국 최초로 선금보증서를 통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모범 사례로, 담당 직원을 엄마주고 싶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엑스포 한옥타운 수익 내라

남악신도시 DJ동상 조명 엉터리”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연일 공직사회에 안일한 업무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있다. 공직社会의 안일함과 '틀에 박힌' 업무 방식을 매번 몰아붙이면서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말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엔 23일 열린 전남도 산하 사업소·출연기관 간담회 자리에서도

박 지사는 이날 "도내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늘고 있느냐", "성과가 이 정도면 (산하기관) 통폐합하거나 재검토 해야 한다"며 '기강잡기' 고삐를 더 바짝 당겼다. 박 지사는 먼저 전남개발공사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여수엑스포 한옥타운 조성사업'으로 2만 7605㎡(8350평)부지에 한옥 50동과 부대시설을 짓는데 총 235억원(토지대금 158억원·건축비 77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도비 50억원 투입 계획에 대해 "도비 부담하라고 하는데 독자적 수익계획 세워라, 스스로 비즈니스할 생각을 해라"며 제동을 걸었다. "땅값과 혜택이기 때문이다"면서 기업 최고경영자(CEO)형 사고를 주문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